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2
----------	------

제출년월일 : 2003. .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개정이유

- 서류의 송달 수당을 우편법에 정한 등기우편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세 고지서 송달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 해석상 불분명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기하며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한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서류의 송달 수당을 우편법에 정한 등기우편요금 수준으로 현실화 함
(안 제12조의2)
- 나. 해석상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9조, 제28조 및 제54조)
- 다.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함(안 제29조, 제30조, 제36조,)
- 라.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 및 징수 절차의 명확성을 기함(안 제36조, 제53조 및 제63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3. 04. 18. ~ 2003. 04. 28.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비과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박 영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김 항 용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양 태 호 (행정 2181)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서류 1매당 500원의”을 “서류 1건당 우편법 제19조에서 정한 등기우편요금에 준하는 금액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 영업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중 “법 제200조”를 “법 제201조”로 한다.

제30조중 “법 제201조”를 “법 제202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감면결정 통지”를 “비과세 및 감면결정 통지”로 한다.

제36조중 “법 제217조”를 “법 제210조”로 하고 동조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영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제42조제2항의 후단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을 삭제한다.

제51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법 제182조”를 “법 제182조 및 법 제234조의9”로 한다.

제53조중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과세기준일 까지”를 삽입하고, 동조 후단중 “제50조”를 “제23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56조의 본문 단서중 “법 제109조제2항”을 “법 제109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의 본문중 “과세기준일 10일전까지”를 “시장에게”로 하고, 동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10일전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법 제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개간,간척등으로인한비과세신청)법 제202조</p>
<p>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29조, 제 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3조(비과세 및 감면결정 통지)</p>
<p>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결정에 불구하고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후단 신설></p>	<p>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0조</p> <p>이 경우 징수방법은 영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p>
<p>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생략) ②소, 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p>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현행과같음) ②</p> <p>구청장</p>

현 행	개 정 안
<p>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u>법 제109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u>법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u></p> <p>1. ~ 3. (생략)</p>	<p>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 ----- -----<u>법 제109조제3항</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3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 2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u>과세기준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u></p> <p>1. ~ 6. (생략)</p>	<p>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 -----<u>시장</u> <u>에게 ----- 다만, 제출기한은</u> <u>재산할은 과세기준일 10일전까지로 하고</u> <u>종업원함에 대하여는 비과세 사유가 발생</u> <u>한 날의 익월 10일까지로 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p>